

FTA에 있어 서비스무역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Activation of Service Trade in FTA

이재영(Jae-Young, Lee)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서비스무역의 의의와 유형 | 참고문헌 |
| III. WTO 서비스무역협정 | Abstract |
| IV. FTA협정상의 서비스무역 | |

국문초록

FTA의 추진은 시대적 요구이며,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통상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FTA체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전문서비스분야의 자격인정제도와 관련하여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서비스분야의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법규범과 제도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수출의 방향을 FTA체결국 즉 선진국위주로 변화시켜야 하며, FTA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국내서비스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를 활용하여 국내 서비스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FTA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내규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규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GATS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내 규제를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 서비스분야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다보니 FTA를 활용하여 개별 서비스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FTA를 활용하여 각 서비스분야가 어떻게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서비스무역, FTA, WTO서비스협정

I. 서론

WTO는 1980년~2009년 기간 동안 세계 상품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6.6%였으나, 서비스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7.9%에 달하고 이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세계 교역량에서 서비스교역이 점유하는 비중은 1980년 15%수준에서 2009년 21%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¹⁾ 이처럼 서비스무역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수출의 경우 상품수출과 비교하여 부가가치 유발률은 약간 상회하는 편이나 취업유발률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GDP 비중이 주요 선진국 대비 1.2~2.3배로 매우 높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해왔으나, 2000년대 이후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1980년대부터 이미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이 성장하는 서비스 경제화가 진행되어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국내 서비스산업은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성장세에 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 대비 75~87%의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은 78.5%로 가장 높고, 영국은 74.3%, 프랑스 57.8%, 일본 69.6%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56.3%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인 68.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³⁾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서비스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5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본 정책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및 신규시장 창출, 해외수요 국내전환, 제조업과 차별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등 국내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서비스업이 성장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해외시장진출은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⁴⁾ 최근에는 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 다행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FTA를 활용한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FTA협정문에 있어 서비스분야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경제가 무역 1조불 달성 이후, 무역 2조불 달성을 하기 위하여 무엇

1) WTO, *Measuring Trade in Services*, November 2010., 김주훈, 서비스산업의 대외진출과 해외고용기회의 확대, 한국개발연구원, 2011.

2) 한국무역협회, 2010년 서비스수출의 국민경제효과 분석 보고서, 2010.

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식서비스산업 및 R&D 동향, 2010. 9., p. 15.

4) 2008년 총 수출 중 서비스 수출비중은 15.1%로 미국의 29.9%, 영국 38.2%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정부 보도자료,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2010. 6.)

보다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공동 발전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거대경제권이라 할 수 있는 EU, 미국과의 FTA협정문에 있어 서비스분야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FTA를 활용하여 서비스무역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서비스무역의 의의와 유형

1. 서비스무역의 의미

서비스는 재화와 더불어 경제활동의 주된 대상으로 부각되어진지 오래이다. 서비스도 재화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어 오기도 하고 소멸되어진 서비스도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를 구분하는 방법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⁵⁾ 따라서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논의보다는 서비스무역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무역이란 상품이 아닌 각종 용역을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하는 거래로서 현행 대외무역법상에서는 경영상담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명시하는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⁶⁾, 운수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업종⁷⁾,

5) J. Elfring, “New Evidence on the Expansion of Service Employment in Advanced Economic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5, 1989, pp. 409-440 ; H. Grubel and M.A. Walker, “Modern Service Sector Growth : Causes and Effects,” in H. Giersch(ed.), *Services in World Economic Growth*, TÜbingen : Kiel University, 1989, pp. 5-23 ; 羽田昇史, *서비스經濟學入門*, 同文館, 1993, p. 44 ; Hill. T.P., “On Goods and Servic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23, 1977., pp. 328-330.

6)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아.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자.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을 지칭하고 있다.

7) 관광진흥법에서는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그 밖에 지식기반응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로 통칭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도 서비스라 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비스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형성(intangibility)과 비분리성(inseparability), 소멸성(perishability)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혹은 서비스거래를 정형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을 서비스거래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Negative 관점에서의 논란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 WTO에서의 서비스무역의 종류와 내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비스라는 용어는 광고, 금융, 통신, 건설, 프렌차이징, 전문직서비스(건축, 회계, 교육, 엔지니어링, 건강 및 법무분야 등), 유통, 관광 및 운송을 망라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WTO 서비스협정(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상에 나타난 서비스무역의 형태는 4가지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는 상품의 국경간 수출입과 같은 생산물의 국경간 이동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동, 생산요소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서비스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서비스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⁸⁾

GATS의 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경간 공급(cross-border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이 해당된다.

8)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서비스의 형태를 규정하기보다는 어떤 거래를 서비스무역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supply)은 서비스 생산자가 서비스 수입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서비스 공급을 말한다. 즉, 서비스 공급주체가 서비스 수출국내에 그대로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생산하여 생산된 서비스를 서비스 수입국에 반출하는 경우로서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의 전형적인 예로서 통신수단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상품에 구현된 서비스 공급을 들 수 있다.⁹⁾ 둘째,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는 서비스 소비자가 서비스 수출국 영토내에서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서비스 소비자는 자연인과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을 포함한다. 이에 는 관광관련 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및 항공기나 선박 등이 해외현지에서 수선·유지 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셋째,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는 외국기업이 모든 형태의 사업체를 서비스 수입국내에 창설하여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와 외국기업이 간접투자로 기존 기업의 인수를 통해 지사와 대표사업소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넷째,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는 외국서비스 공급기업의 지사,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현재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 회계사, 엔지니어등 개별 서비스 생산자가 서비스 수입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¹⁰⁾

서비스의 유형에 따른 실례를 들어보면, 국제전화는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서비스이다. 관광은 어떤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이다. 다른 회원국의 영역내에 시설이 있거나 일시적으로 대표를 파견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서비스 공급도 서비스무역이다. 금융은 서비스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이다. 자문과 같은 전문직 서비스는 그 내용이 국제우편으로 할 수 있으면, 서비스의 국가간 이동에 해당하겠지만, 전문가가 입국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자연인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이 된다.¹¹⁾

이와 같은 4가지 유형 가운데 이론상이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무역의 유형은 앞의 3가지로 볼 수 있으며, 4번째 유형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유형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서비스의 공급’(supply of a service)¹²⁾은 서비스의 생산(production), 유통(distribution), 마케팅(marketing), 판매(sales), 배달(delivery) 등을 포함한다.

9) 통신수단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예로는 위성에 의한 국가간 케이블 방송 등을 들 수 있으며, 상품에 구현된 서비스 공급의 예로는 컴퓨터 디스켓에 내장된 각종 프로그래밍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10) 김우규, “서비스무역과 그 유형”,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13권, 2000. 2., pp. 690-691
(서비스가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국제간 거래를 통하여 수입국에서 소비되는 국경이동의 유형, 둘째, 서비스의 생산을 위하여 생산자가 수입국으로 이동하는 생산자 이동의 유형 셋째, 소비자가 서비스 생산국으로 이동하는 유형. 넷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제3국으로 이동하는 제3국 무역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 山浦廣海, 『GATT 서비스 교섭의 타개와 이론』, 국제상사법무, Vol 19., 1991., p. 1313.)

11) 장효상, 『국제경제법』, 법영사, 1999, pp. 315-319.

12) GATS 제28조.

Ⅲ. WTO 서비스무역협정

1. 서비스무역협정의 정의와 구성

WTO의 서비스 무역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¹³⁾은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 1B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6부 29조의 본문, 부속서 및 결정, 양해사항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일차적으로 WTO의 전 회원과 어느 분야이든 간에 서비스의 무역과 관련된 정부가 구매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규율하는 일반적 원칙 및 규정을 명시한 기본협정(*framework convention*)이며, 제2부에 규정된 이에 따른 일반적 의무는 표현 그대로 WTO의 각 회원이 양허계획서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는 제3부 구체적 약속의 의무와는 구별된다.

한편, UR의 서비스 업종 분류표를 보면 서비스를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은행, 건강, 여행, 오락, 운송, 기타 등 12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법무 서비스는 사업서비스 가운데 전문서비스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들 분류표 가운데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다.

협정문 제 1조는 서비스 협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들의 제반조치(*measures*)”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협정은 규율대상인 서비스의 범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비스 자체에 대한 개념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다.

둘째, 서비스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치’에는 법률,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해위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회원국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모든 형태의 조치를 말한다.

셋째, 정부권한의 수행상 공급되는 서비스는 서비스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정부권한의 수행상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차원에서 공급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¹⁴⁾

또한 서비스 협정문은 서비스 무역의 정의와 관련하여 4가지 유형의 서비스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협정문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13) GATS의 특징은 최초로 서비스무역을 규율하기 위한 다자간무역협정이고, 상품무역협정(GATT)과 달리 최혜국대우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였으며, 자유화방식에 있어서도 *positive*와 *negative*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상품거래와 달리 통관 등의 절차가 없으므로 관세를 획일적으로 낮추기 위한 일괄타결방식이나 선형방식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14) 이춘삼(1994), 『무역관계법』, 법문사, pp. 480.

2. 일반적 의무

1) 최혜국 대우(MFN :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회원국들은 이 협정하에서 취하는 어느 조치에 있어서나 다른 회원국들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들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며 모든 회원국들에 어느 회원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¹⁵⁾ 이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라 할지라도 제 2조의 면제에 관한 면제에 관한 부속서(Annex on Article II Exemptions)에 기재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지될 수 있다.¹⁶⁾

특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정 국가들에게 계속 보다 유리한 대우를 유지하려는 회원국 정부에게 이 협정이 시행되기 전에 ‘최혜국대우 면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서비스무역이사회가 WTO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면제목록을 검토하고 원칙적으로 이들 면제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⁷⁾

2) 투명성의 보장(Transparency)

각 회원국들은 협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의무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서비스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 법령이나 행정지침, 또는 그 변경내용은 즉시,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번 씩 서비스 무역이사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문의처는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한다.¹⁸⁾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는 국내법규가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제수단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양허한 업종의 서비스 무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는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¹⁹⁾ 양허된 서비스의 공급에 허가가 필요한 경우, 신청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며, 주무 당국은 신청서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 GATS 제2조 1항.

16) GATS 제2조 2항.

17) GATS 제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 3, 6.

18) GATS 제3조 1~3항.

19) GATS 제6조 1항.

3) 인정제도(Recognition)

각 회원국은 허가기준이나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요건 등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에서 취득한 학력, 경력, 면허, 자격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은 그 기준이나 요건의 적용에 있어서 국가간의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는 방식이 되지 않아야 한다.²⁰⁾ 이 조항은 최혜국 대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하는 기관이 일부 회원국에서의 하력이나 경력만을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회원들이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회원들에게도 협상을 거쳐 이 협정에 가입하거나, 혹은 이에 상응한 협정의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만일, 어떤 회원이 자동적으로 그러한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원들에게도 학력, 경력, 면허,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4) 국제지급 및 이전 (Payments and Transfers)

이 협정 하에 구체적인 약속과 관련된 경상거래를 위한 국제지급이나 이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²¹⁾ 예외적으로 국제수지상이나 대외재정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무역 및 그와 관련된 거래를 위한 지급이나 이전을 포함한 서비스무역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²²⁾ 이 제한은 잠정적인 것이어야 하며,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²³⁾

5) 경쟁 제한적 영업관행(Business Practices)

회원국들은 또한 서비스공급자들의 일정한 경쟁 제한적 관행들이 경쟁을 제한하여 서비스 무역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으면, 그러한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6)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어느 회원이든지 국가간의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이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

20) GATS 제7조 1, 3항.

21) GATS 제11조 1항.

22) GATS 제12조 1항.

23) GATS 제12조 2항 (e).

된 제한이 되지 않는 한, 공중도덕의 보호나 공공질서의 유지, 사람이나 동·식물 건강의 보호, 사기 및 기만행위의 방지, 개인적인 비밀의 안정성 보호,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²⁴⁾ 국가안보상의 이익의 보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²⁵⁾

전통적으로 상품무역에 있어서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자유무역시대라 하더라도 국민의 공중도덕, 사회의 공공질서 및 국가안보 등과 상충되는 의미에서의 무역자유화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그 까닭은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도덕 등의 제 문제는 국가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그 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존권의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안보 등을 침해하면서까지 무역자유화를 허용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다.²⁶⁾ 이러한 취지하에 GATT(1994) 제20조와 제21조(Public Morals, Public Order)의 규정을 GATS 제14조와 제14조 1에서 규정하고 있다.

7) 기타 조항

본 협정의 기본조항들은 추후 협상을 통하여 현행법규에 새로이 추가될 규정들을 예정하고 있는 여러 조항들에 의하여 보완된다.

긴급수입제한조치(emergency safeguard measures) 문제에 대하여는 세이프가드 조항의 삽입을 위한 추후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그 결과가 WTO 협정 발효 후 늦어도 3년 이내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²⁷⁾ 서비스의 정부조달에 관한 다자간 협상도 WTO 협정 발효 후 늦어도 2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²⁸⁾

회원들은 보조금에 서비스무역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무역왜곡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자간 규범을 개발하기 위한 협상에 참가해야 한다. 이 협상에서는 상계절차의 적정성 문제도 다루어지게 된다.²⁹⁾

3.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

1) 개요

이 협정 3부는 제16조(시장접근), 제17조(내국민대우), 제18조(추가적 약속)로 구성되어 있다.

24) GATS 제14조 (a), (b), (c)항

25) GATS 제14조 1항.

26) Jackson, John H., and Davery, William J., 『Leg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Relations』, West Publishing Co., 1986, p. 911.

27) GATS 제10조 1항.

28) GATS 제13조 2항.

29) GATS 제15조 1항.

서비스 무역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품 무역에서와는 달리 주로 국내적 규제를 통하여 규율된다. 그 이유는 많은 서비스 무역이 서비스 자체의 국가간 이동이 아니라, 관광과 같이 한 회원국 영역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이나, 외국인 건설 근로자와 같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외국의 자연인의 주재나 또는 외국계 은행이나 지점에 의한 금융 서비스와 같이 외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 주체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비스, 사람,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데다, 서비스 무역에 관한 다자간 법규에는 비관세 장벽의 일반적 금지 및 파별적인 국내규제 전반에 대한 금지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그 자유화가 상품 무역에 비해 훨씬 복잡해지게 된 것이다.

제3부의 3개 조항은 본 협정에 첨부되어 있는 국별 계획서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서비스 무역에 대한 두 번째 단계의 법적 규제는 국별 계획서에 기재된 시장접근의 약속(market-access commitments), 내국민대우의 약속(nations treatment commitments), 기타 추가적인 약속(additional commitments) 및 최혜국대우의 면제가 기재된 국별 목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 시장접근(Market-Access)

각 회원국 정부의 국별 양허계획서(schedule)에는 자국 시장의 접근을 보장한 서비스 분야나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추가적 자유화 약속과 관련된 1제반조치,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그 약속의 이행을 위한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각 회원국들은 시장접근에 있어서 다른 회원국들의 서비스 및 그 공급자에게 자국의 양허계획서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³⁰⁾ 시장접근이 양허된 분야에 대해 양허계획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각 회원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하지 말아야 한다.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서비스 총 거래액 및 총자산에 대한 제한조치, 숫자단위로 표시된 총 영업 횟수, 및 총 산출액에 대한 제한조치, 특정서비스 분야에 고용되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총 산출액에 대한 제한조치, 특정 종류의 법인이나 합작회사의 형태를 취하도록 제한하는 조치, 그리고 외국인의 지분이나 투자총액에 대한 제한 등이 그것이다.³¹⁾

30) GATS 제16조 1항.

31) GATS 제16조 2항.

3) 내국민 대우(Nations Treatment)

각 회원국은 양허계획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 조건 및 자격요건에 따라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자국의 동종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한다. 내국민대우를 위해 국내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취해지는 조치와 형식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경쟁의 조건을 바꾸게 되면 내국민대우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³²⁾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동일한 조치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차별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형식으로는 다른 조치라도 동등한 대우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각 회원의 양허계획서에 기재된 분야와 그 조건 및 자격요건이 부가되어 있어서 GATT 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던 내국민대우에 비해서는 종합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³³⁾

4) 추가적인 약속(Additional Commitments)

회원국들은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사항 이외에 자격요건, 표준 또는 허가에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는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조치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속은 각 회원국의 양허계획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5) 연속적인 다자간 협상을 통한 점진적 자유화(Progressive Liberalization)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시되어 그 후 주기적으로 이어져갈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위한 협상이 있을 것이다. 이 협상은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³⁴⁾

6) 양허의 수정(Modification of Schedules)

양허 발효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언제라도 양허의 수정이나 철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관계 당사자는 보상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관계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피해당사자는 당해 사안을 중재에 부탁할 수 있다.³⁵⁾

32) GATS 제17조.

33) 장효상, 『국제경제법』, 법영사, 1996, pp. 315~323.

34) GATS 제19조 1항.

7) 부속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는 금융서비스 자유화약속에 관한 양해서와 분야별 여러 부속서들이 있다. 본 협정 하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 이동에 대한 부속서(Annex on Movement of Natural Persons Supplying Services under the Agreement)는 회원국 정부가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구체적 양허 사항에 대한 협상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시민권이나 영주권, 또는 영구고용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Annex on Financial Services)는 투자자, 예금주,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신중한 조치를 취하고, 완전하고 안정적인 금융제도를 보장할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협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행정작용으로서 공급되는 서비스도 규정되어 있다.

통신부속서(Annex on Telecommunications)는 통신분야가 경제적 활동이란 독립된 분야이면서 동시에 다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매개수단이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인식할 것과 정부는 공중통신망에 외국서비스공급자도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운송서비스에 대한 부속서는 취항권이나 그 행사에 직접 관련되는 서비스에 관련되는 조치는 본 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본 협정은 항공기의 수선 및 유지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 마케팅, 컴퓨터 예약서비스 등에 적용된다.³⁵⁾

IV. FTA협정상의 서비스무역

1. 서비스무역과 FTA

최근의 글로벌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도하개발어젠다(DDA)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35) GATS 제21조 1항(a), 제2항(a), 제3항(a).

36) 이춘삼, 『국제통상법』, 법문사, 1999, pp. 248-259.

며, WTO 각료회의를 통해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까닭에 많은 국가들이 더욱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높아졌다.

FTA를 포함한 RTA의 발효 건수를 살펴보면 1958년~1994년 GATT체제에서는 43개가 발효되었으나, 그 이후 1995년~2000년까지는 53개, 2001년~2005년까지 87개, 2006년부터 2011년 9월까지 118개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³⁷⁾ 따라서, FTA체제속에서 서비스무역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FTA에 있어 서비스무역은 국내 서비스가 해외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국외 서비스가 국내로 유입되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FTA협상에 있어서 서비스분야의 경우는 서비스분야 각각의 특수성과 거래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협상이 쉽지 않고 이에 대한 협정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도 쉽지 않은 분야이다.

상품분야의 경우는 관세장벽에 있어서는 관세율 협상을 통하여 현재 수준보다 낮거나 무관세로 방향을 잡고 협상을 추진하고, 비관세장벽의 경우는 해당 장벽에 대하여 협상을 통하여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형태로 진행되나, 서비스의 경우는 각각의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시장을 개방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일이 협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는 상품분야와 비교하여 국제경쟁력은 대체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FTA협상과정에서 서비스분야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잘못하면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거대 경제권에게 잠식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FTA발효 이후 어떻게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 FTA협정문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은 협정 발효 후 협상을 통하여 향후 제도나 협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FTA 내용검토를 통하여 서비스분야의 협상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7) 명진호, 2011년, 주요국 FTA 추진동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1.

2. 한·미 FTA에서의 서비스분야 협정내용

한·미 FTA협정문에서는 제12장 국경간 서비스무역(Cross-Border Trade in Service)³⁸⁾를 통하여 서비스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 통신(Telecommunications),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Chapter)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한·미 FTA 서비스분야에 대한 것을 모두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 분야에 있어 원칙과 주된 내용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12장 국경간 서비스무역에서는 모든 서비스분야를 협정문 적용 대상으로 설정하고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서비스, 금융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정부조달·정부보조금·정부제공 서비스 등은 제외하고 있다.

한·미 FTA서비스규정에서는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4대 일반적 의무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인정 그리고 시장접근 제한조치 도입금지, 현지주재 의무부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조항³⁹⁾에 의거하여 유보목록⁴⁰⁾에 적시할 수 있도록 Negative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래칫조항(Ratchet Mechanism)이 있는데, 이는 자유화 후퇴방지 메카니즘으로 현행 규제보다 자유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FTA의 본래 의미가 현재의 무역장벽수준보다 같거나 낮은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 큰 틀에서 본다면 일정부분 유사한 의미로서 본 조항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국가정책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서비스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⁴¹⁾

38) 여기에서의 국경간 서비스무역이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과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고 있다.

39) 한·미 FTA협정문 제12장 제6조.

40) 유보안과 관련해서는 현재유보(Annex I)와 미래유보(Annex II)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유보는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자유화 후퇴방지 메카니즘이 적용되고 미래유보의 경우는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보 개수는 91개이고 미국측 유보 개수는 18개로 우리나라가 많은 분야에서 유보를 하고 있으나, 이는 경쟁력 차이 등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유보 개수가 많은 것으로 만족할 사항은 아니라 보여진다.

41) 한·미 FTA협정문 제12장 제7조.

또한 자격상호인정(Recognition)⁴²⁾과 관련하여 상대국 서비스공급자의 자격·면허를 인정할 수 있으며 자격 상호 인정 현황에 대한 정보교환을 규정하고 있다.⁴³⁾ 또한 투명성(Transparency)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 관계 법규의 입법·개정 추진 시 합리적 사전 예고 기간을 제공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립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문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문직 서비스 진출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Recognition) 조항의 부속 문서를 통해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Professional Service Working Group)를 구성,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獸醫)의 3개 분야⁴⁴⁾를 중심으로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논의를 개시하기로 되어 있다.⁴⁵⁾ 인정분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과 미국이 어떤 기준에서 상호 인정을 규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측 입장에서 볼 때, 전문직 종사자에게 요구되었던 요건(requirement)이나 면허(Licenses) 기준 등이 기존의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미국이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다면 미국의 전문직 종사자의 한국 시장으로의 진출은 크게 확대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인정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양 국가간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특송(Express Delivery Service)시장을 개방하는 데 있어 협정문에 현행 시장 개방 수준을 유지, 우정 당국의 독점 지위 남용 금지, 교차지원 금지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서의 국제특송이라 함은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 인쇄물, 소포,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의 수집이나 운송 및 배달로서, 서비스 공급 전 과정을 통하여 그 품목을 추적하고 통제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국제특송의 경우 우편법 시행령상의 무역관련 서류 등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제서류까지 확대하여 현재 우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셋째, 투자와 관련하여 공공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의 원칙 등의 의무에 반하는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보를 기재하였다. 현재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 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제한을 하고 있으나, 본 규정에서는 공공질서(Public order)에 대해

42) 한·미 FTA협정문 제12장 제9조.

43) 외교통상부 한·미 FTA자료, 2010.

44) 협의 분야에 대해서는 양측의 합의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분야를 확대할 수 있다.

45) 한·미 FTA협정문 부속서 12-가, 부록 12-가-1

서만 규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국내 전문직서비스 분야 즉, 법무, 회계, 세무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개방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서비스의 경우는 발효 시 1단계로 미국법 및 국제공법자문 허용, 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발효 후 2년 내 2단계로 국내 로펌과의 업무 제휴 허용, 발효 후 5년 내 3단계로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간 조인트벤처 사업체 설립 및 동 사업체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을 들 수 있다. 회계와 세무의 경우는 2단계로 시장 개방을 추진하는데, 발효시 미국 회계·세무 자문 허용, 미국 회계·세무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발효 후 5년 내 2단계 조치로 국내 회계·세무 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 방송서비스 분야의 시장을 개방하고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스크린쿼터제도 적용을 위한 의무 상영일수를 73일로 규정하였고, 교육, 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분야는 미래 유보를 규정하였다.

3. 한·EU FTA에서의 서비스분야 협정내용

한·EU FTA에서의 서비스분야의 개방수준은 한·미 FTA의 개방수준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한·미 FTA의 경우는 개방하지 않는 분야를 열거하는 Negative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한·EU FTA에서는 개방하려는 분야를 열거하는 Positive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EU FTA협정문 제7장에서 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에서의 목적 및 적용범위⁴⁶⁾를 살펴보면 양 당사국은 WTO 협정상의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서비스무역의 점진적이고 상호적인 자유화와 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한·미 FTA에서처럼 WTO 원칙 등을 최대한 적용하려 한 것을 알 수 있다.⁴⁷⁾

제7장 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에서는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국경간 서비스 공급, 제3절 설립, 제4절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재, 제5절 규제의 틀, 제6절 전자상거래, 제7절 예외의 규정을 담고 있다. 한·EU FTA협정 제2절에서의 국경간 서비스공급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로의 공급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

46) 한·EU FTA협정문 제7.1조

47)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서비스 교역 및 경제적 활동을 위한 설립을 적용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단, 정부조달, 보조금, 정부권한 행사,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인의 이동은 공통적으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시청각서비스(방송서비스)의 경우는 문화협력의정서에 언급되어 있으며, 이 외에 연안해운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핵연료 채굴, 제조, 처리, 군수품 및 전략물자 제조 분야의 비서비스업 역시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서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공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비스는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근거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원칙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절에서 각 당사자에 의하여 자유화된 분야와 유보에 의하여 해당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적용 가능한 시장 접근 및 내국민 대우 제한은 부속서에 포함된 약속 목록에 규정되어 있다. 제3절 설립은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의 구성, 인수, 유지 또는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를 의미한다. 제4절에서는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재와 관련하여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상용서비스판매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의 당사자 영역으로의 입국과 일시 체류에 관한 양 당사자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인정(Recognition)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요건, 자격, 면허 및 그 밖의 규정의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협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협정은 GATS 제7조 자격인정과 합치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미 FTA협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WTO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려 하고 있다.

전문직서비스(법률, 회계, 세무)의 경우는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비자가 국내에서 국제 공법 및 자격취득국 법률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경우는 3단계로 회계와 세무의 경우는 2단계로 시장 개방을 추진하기로 합의되었다.

한·EU FTA협정문상의 서비스분야별 시장개방 범위를 살펴보면 유통서비스의 경우는 쌀·홍삼 도소매, 담배·LPG 관련 소매 서비스는 미개방하였으며, 중고차 및 가스 관련 제품 도소매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요 심사 요건을 부과하였다. 환경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생활하수 처리서비스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외국사업자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보장하고 다만, 외국 사업자의 진출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국내 업계 대응 차원에서 협정 발효 후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⁴⁸⁾

48) 외교통상부 한·EU FTA자료, 2010.

4. FTA를 활용한 국내서비스무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거대 경제권인 동시에 서비스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화와 더불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시장개방이나 규범의 틀면에 있어서 차이점도 있으나, 일정부분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FTA협정을 종합하여 국내서비스무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 기술해보고자 한다.

첫째, 향후 FTA 자격인정(Recognition)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⁴⁹⁾ 자격인정에 대한 방법으로는 당사국간의 자격인정제도를 통일시키는 조화(harmonization)를 통한 방법, 서비스공급자의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새로운 협정을 통하여 상호주의적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미래 잠재적 부가가치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반드시 육성해야 할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구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한 향후 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분야에 있어 법규범과 제도 등을 조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FTA협정은 많은 내용에 있어 발효 후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서비스산업분야에 있어 법규범이나 제도 등을 충분히 마련한다면 향후 FTA 서비스협상 분야에서 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 법을 근거로 하여 필요한 분야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 지금도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어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기관들이 산재하여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셋째, 서비스수출의 방향을 개도국이나 후진국 등에서 선진국 즉, 미국이나 EU 등으로 수출하기 위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수출상품은 이러닝, 의료관광, 한류⁵⁰⁾, 콘텐츠 등을 들 수 있다. 정부 주도의 지식서비스상품의 주된 수출지역을 살펴보면 미국이나 EU등에도 일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있긴 하나 대부분이 공적원조(ODA)를 통한 후진국 혹은 개도국 그룹,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일부 국가, 일본

49) 서비스 공급형태에 있어 자연인 혹은 법인 등이 향후 해외에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매우 커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상호 국가간에 자격인정 범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해외 진출 여부가 보다 용이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50) 현재에도 한류 특히 K-pop(싸이, 소녀시대, 비 등)이 미국이나 EU 등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선진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등에 맞추어져 있다. 이는 서비스분야에 있어 FTA를 통한 교역확대 측면에서 서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FTA들 안에서 서비스교역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 추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규모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FTA를 통해 개방된 국내 서비스시장에 미국이나 EU의 선진 서비스 기술과 시스템 등을 한국 서비스산업에 접목시킴으로서 서비스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통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로서 활용하는 것이다.⁵¹⁾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국내 서비스기업들이 해외 서비스기업들에게 잠식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회피하기 위한 안전핀으로서 경영활동이나 지분참여 등에 있어 단계적 개방을 철저하게 유지시킴으로서 국내 서비스기업에게 갈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 조정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를 활용하여 국내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은 내수시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수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종합적인 대책은 부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거기에 더하여 FTA를 활용한 수출정책은 더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물리적 상품의 경우에는 FTA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서비스의 경우는 그러한 정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FTA를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무역의 확대를 통하여 무역규모 1조 달러의 신화를 달성하였고, OECD DAC회원국이 되면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지위가 변화하는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급속한 지식정보화의 확산, FTA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새로운 산업육성정책을 통하여 글로벌통상환경에 적

51)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업체 규모가 영세한 수준에 있어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과당경쟁도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서비스업의 수익확보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하여 수익을 통한 체투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경우 지속적인 영세성을 벗어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응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한 키워드가 바로 서비스산업이며, 동시에 FTA안에서 어떻게 서비스무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무역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FTA체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향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전문서비스분야의 자격인정제도와 관련하여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하며, 서비스분야의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법규범과 제도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수출의 방향을 FTA체결국에 집중해야 하며, FTA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FTA를 활용하여 국내 서비스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이라 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FTA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내규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 FTA협정에서는 국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 영역내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내서비스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의 규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FTA협정문이나 GATS협정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⁵²⁾ 국내 규제를 활용하느냐가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 등을 확보하는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TA협정에 있어 서비스분야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다보니 FTA를 활용하여 개별 서비스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FTA를 활용하여 각 서비스분야가 어떻게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품무역은 우리나라가 무역 1조불을 달성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서비스무역을 통하여 무역 2조불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52) 다만 이러한 규정은 차별수단(means of discrimination)이나 위장된 제한(disguised restriction)으로서 만들어지거나,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규정에 의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우규(2000), “서비스무역과 그 유형”, 「무역상무연구」, 제1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 김주훈(2011), 서비스산업의 대외진출과 해외고용기회의 확대, 한국개발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3), “UR 총점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문서(2005), “FTA 추진과 서비스무역 협상전략”,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 법무부(2000), 『GATS 해설서』, 법무부.
- 서헌재(1996),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 윤창인 외(2006), 『한·미 FTA서비스부문 교역현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남구(2003), “한국의 FTA 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4호, 한국무역학회.
- 이춘삼(1999), 『국제통상법』, 법문사.
- 장효상(1999), 『국제경제법』, 법영사.
- 한국무역협회(2010), 2010년 서비스수출의 국민경제효과 분석 보고서.
- 한·미 FTA협정문 및 설명자료
- 한·EU FTA협정문 및 설명자료
- 山浦廣海(1991), 『GATT 서비스 교섭의 타개와 이론』, 국제상사법무, Vol 19.
- 羽田昇史(1993), 『サービス經濟學入門』, 同文館.
- Jackson, John H., and Davery, William J.(1986), 『Leg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Relations』, West Publishing Co.
- J, Elfring(1989), “New Evidence on the Expansion of Service Employment in Advanced Economic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5.
- H. Grubel and M.A. Walker(1989), “Modern Service Sector Growth : Causes and Effects,” in H. Giersch(ed.), Services in World Economic Growth, Tübingen : Kiel University.
- Hill. T.P.(1977), “On Goods and Servic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23.
- Nicolaides · Phedon(1989), “Economics Aspects of Services : Implications for GATT Agreements” Journal of World Trade Vol 23.
- Petersmann, Ernst-Ulrich and Hilf, Neinhard(1991), 『The New GATT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Legal and Economics Problems)』,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 WTO, Measuring Trade in Service, November 2010.

ABSTRACT

A Research on the Activation of Service Trade in FTA

Jae-Young, Lee*

Service trade is very important in Korea Economy. The world economy is changing with the FTA. Lots of FTAs are going on between countries and economic blocs in the world economy, as the battle field of FTA. Therefore, Service trade should be activated in FTA.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of all, the government quickly create a service-related laws. and establish the principles and criteria for recognition systems. Also, Exports should chang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policy for attracting investment to expand overseas markets in FTA.

The field of service trade is very important for the growth of the Korea Trade. If we neglect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trade, we can not expect the growth of the Korea trade. We should striv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trade.

Key Words : Service Trade, FTA, GATS

* Professor,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heongju University.